

2025년도 직무중심 신입사원(5급, 6급) 채용 공고

1. 채용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채 용 신 분	◇ 5급 : 정규직(일반직) ◇ 6급 : 정규직(기사직) ※ 신입사원 교육 및 수습 근무 후 정규 임용. 수습 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음
급 여 수 준	◇ 공사 내규에 따름 - 5급 : 48,934천원, 6급 : 39,535천원 ※ 경력 없음, 성과급(입사 2년차부터 해당) 포함 기준 - 정부 및 내부 경영실적평가 B등급 기준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경력은 우리 공사 연봉제규정,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채용관리세칙에 따라 인정되며, 공사 규정은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사규’에 상시 공개되어 있음
수 습 기 간	◇ 12개월 이내(사정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 ※ 24년 신입사원(5급·6급) 수습기간 6개월 운영
정 년	◇ 만 60세
근 무 지	◇ 경영여건 및 희망근무지 고려하여 모집권역 내 근무지로 배치 - (5급·6급) 본인이 지원한 모집권역 내에서 5년간 의무근무* * 전국권역은 해당없음

2. 채용전형 및 인원

□ 채용인원 : 288명 (일반전형 270명, 보훈전형 14명, 장애인전형 4명)

구 분	합계	일반전형	보훈전형	장애인전형
계(명)	288	270	14	4
5급(일반직)	238	223	11	4
6급(기사직)	50	47	3	-

□ (5 급) 직계별 선발인원

채용분야		합계	일반전형	보훈전형	장애인전형
계(명)		238	223	11	4
행 정	소 계	83	75	6	2
	경 상	53	48	4	1
	법 정	23	20	2	1
	농 학	7	7	-	-
토 목	소 계	84	78	4	2
	토 목 일 반	80	74	4	2
	조 경	2	2	-	-
	도 시 계 획	2	2	-	-
지 질	지 질	10	10	-	-
기 전	소 계	50	49	1	-
	기 계	18	17	1	-
	전 기	17	17	-	-
	건 축	15	15	-	-
전 산	전 산	5	5	-	-
환 경	환 경	6	6	-	-

□ (6 급) 직계별 선발인원

채용분야		합계	일반전형	보훈전형
계(명)		50	47	3
토 목	토 목 일 반	17	15	2
기 전	소 계	33	32	1
	기 계	13	13	-
	전 기	14	13	1
	건 축	6	6	-

□ (5급) 모집권역별 선발인원

모집 전형	모집 권역	합계	행정			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경상	법정	농학	토 일 목 반	조경	도시 계획		기계	전기	건축		
총	합계	238	53	23	7	80	2	2	10	18	17	15	5	6
일 반 전 형	계	223	48	20	7	74	2	2	10	17	17	15	5	6
	전국	28	3	1	1	2	2	2	3	1	1	1	5	6
	경기	10	2	1	1	2	-	-	1	2	1	-	-	-
	강원	12	2	1	-	6	-	-	1	-	1	1	-	-
	충북	15	4	1	-	4	-	-	2	2	1	1	-	-
	충남	42	8	4	1	17	-	-	1	4	4	3	-	-
	전북	33	11	4	1	12	-	-	1	1	1	2	-	-
	전남	38	8	4	1	14	-	-	-	4	4	3	-	-
	경북	29	7	3	1	11	-	-	-	3	2	2	-	-
	경남	13	2	1	1	6	-	-	-	-	2	1	-	-
	제주	3	1	-	-	-	-	-	1	-	-	1	-	-
	보 훈 전 형	계	11	4	2	-	4	-	-	-	1	-	-	-
전국		11	4	2	-	4	-	-	-	1	-	-	-	-
장 애 인 전 형	계	4	1	1	-	2	-	-	-	-	-	-	-	-
	전국	4	1	1	-	2	-	-	-	-	-	-	-	-

※ 권역 단위로 선발 후 모집권역내 근무지 배치(전국권역은 본사 및 전국부서)

- 경기권역 내 3원(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화안사업단, 토지개발사업단, 충남권역 내 안전진단본부, 충남서부관리단, 전북권역 내 금강사업단,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전남권역 내 영산강사업단 포함 * **붙임5** 참조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권역,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는 충남권역, 광주광역시는 전남권역, 대구광역시는 경북권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남권역에 포함

□ (6급) 모집권역별 선발인원

모집전형	모집권역	합계	토목	기전				
			토목일반	기계	전기	건축		
총	합	계	50	17	13	14	6	
일 반 전 형	계		47	15	13	13	6	
	경	기	2	-	1	1	-	
	강	원	2	1	-	1	-	
	충	북	3	1	1	1	-	
	충	남	6	2	2	1	1	
	전	북	11	2	3	4	2	
	전	남	8	4	2	1	1	
	경	북	13	4	3	4	2	
	경	남	2	1	1	-	-	
	보	훈	계	3	2	-	1	-
전	형	전	국	3	2	-	1	-

※ 권역 단위로 선발 후 모집권역내 근무지 배치(전국권역은 본사 및 전국부서)

- 경기권역 내 3원(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화안사업단, 토지개발사업단, 충남권역 내 안전진단본부, 충남서부관리단, 전북권역 내 금강사업단,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전남권역 내 영산강사업단 포함 * **붙임5** 참조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권역,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는 충남권역, 광주광역시는 전남권역, 대구광역시는 경북권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남권역에 포함

□ 주요직무(수행직무 세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

○ 5급(일반직)

채 용 분 야	주 요 직 무
행정 (경상, 법정, 농학)	경영기획, 자산관리, 인사, 예산, 회계·감사, 구매조달, 국제학술교류 등
토목 (토목일반, 조경, 도시계획)	설계기획관리, 유지관리, 토목건설사업관리, 국토·지역계획, 국제농업협력 등
지질	건설공사공무관리, 지반설계, 지하수관리, 국제농업협력 등
기전(기계)	유지관리, 건축설비유지관리, 산업·환경설비감리, 산업·환경 기계설비시공, 해외농업개발지원 등
기전(전기)	유지관리, 전기설비설계, 전기설비감리, 자동제어시스템운영, 태양광에너지생산, 해외농업개발지원 등
기전(건축)	설계기획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공무관리, 건축설계, 건축감리, 건축설비시공, 건축설비감리, 해외농업개발지원 등
전산	정보기술기획, 응용SW엔지니어링, 보안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품질보증, 네트워크구축, 해외사업관리 등
환경	수질환경관리, 토양관리, 생태관리, 환경영향평가, 내수면양식, 국제협력, 해외사업관리 등

○ 6급(기사직)

채 용 분 야	주 요 직 무
토목(토목일반)	설계기획관리, 유지관리, 토목건설사업관리, 국토·지역계획, 국제농업협력 등
기전(기계)	유지관리, 건축설비유지관리, 산업·환경설비감리, 산업·환경 기계설비시공, 해외농업개발지원 등
기전(전기)	유지관리, 전기설비설계, 전기설비감리, 자동제어시스템운영, 태양광에너지생산, 해외농업개발지원 등
기전(건축)	설계기획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공무관리, 건축설계, 건축감리, 건축설비시공, 건축설비감리, 해외농업개발지원 등

※ 상기 직무는 채용 분야별 대표적인 직무이며, 주요 직무 외의 다른 직무도 입사 후 수행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기본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전공·성별·연령 제한 없으며, 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붙임1 참조 ◇ 아래 모집권역 지원자는 권역 내 소재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해당권역에서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모집권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소재학교는 최종학력 기준이 아니며, 지원한 모집권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면 가능. 단, 대학원 이상 제외

□ 직급·직계별 지원자격

○ (5급) 자격 및 어학 기준

구분	지원 자격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야(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응시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인정자격증 목록 : 붙임2 참조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보훈전형 지원자도 기술 분야에 응시할 경우 5급은 "기사" 이상 자격 필요 																																			
공인 어학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2023.11.18.(2차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부터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10.15.)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 시험 성적이 전형별 기준 성적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의 경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보훈 전형 지원자도 기준 성적 이상 공인어학성적 보유해야 지원 가능 ※ 어학성적 환산기준 붙임3 참조 ◇ 어학성적 인정 기준(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형) 기준성적 이상 득점 시, 성적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장애인·보훈 전형) 기준성적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시험종류</th> <th colspan="5">영어</th> <th>일본어</th> <th colspan="2">중국어</th> </tr> <tr> <th>TOEFL</th> <th>TOEIC</th> <th>TOEIC-S</th> <th>New TEPS</th> <th>OPIc</th> <th>JPT</th> <th>新HSK</th> <th>BCT</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성적</td> <td>IBT 68</td> <td>600점</td> <td>IL</td> <td>227점</td> <td>IL</td> <td>600점</td> <td>4급 210점</td> <td>BCT(B) L/R 600점</td> </tr> <tr> <td>만점기준</td> <td>IBT 98</td> <td>850점</td> <td>IH</td> <td>336점</td> <td>IH</td> <td>850점</td> <td>5급 255점</td> <td>BCT(B) L/R 85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의 경우 별도 환산 기준 적용 (붙임3 참조) 	시험종류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FL	TOEIC	TOEIC-S	New TEPS	OPIc	JPT	新HSK	BCT	기준성적	IBT 68	600점	IL	227점	IL	600점	4급 210점	BCT(B) L/R 600점	만점기준	IBT 98	850점	IH	336점	IH	850점	5급 255점	BCT(B) L/R 850점
시험종류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FL	TOEIC	TOEIC-S	New TEPS	OPIc	JPT	新HSK	BCT																												
기준성적	IBT 68	600점	IL	227점	IL	600점	4급 210점	BCT(B) L/R 600점																												
만점기준	IBT 98	850점	IH	336점	IH	850점	5급 255점	BCT(B) L/R 850점																												

○ (6급) 자격 및 어학 기준

구 분	지 원 자 격
자 격	◇ 기술분야(토목, 기전) 응시자는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인정자격증 목록 : 붙임2 참조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보훈전형 지원자도 기술분야에 응시할 경우 6급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 필요
공 어 성 인 학 적	- 해 당 없 음 -

□ 전형별 자격사항

구 분	지 원 자 격
장 애 인 전 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위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장애인 전형"이 아닌 타 전형 지원 시 장애인 우대 가점 부여 ※ "장애인 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 응시 불가
보 훈 전 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전형" 외 다른 전형으로 응시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른 가점 부여 ※ "보훈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 응시 불가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우대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에 따른 가점 부여(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고급자격증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 서류심사 면제 (공인어학성적 등 기본 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자립준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2020.10.16. 이후 퇴소)인 자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여성으로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10.15)까지 계속하여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증빙서류를 통해 직장이력 확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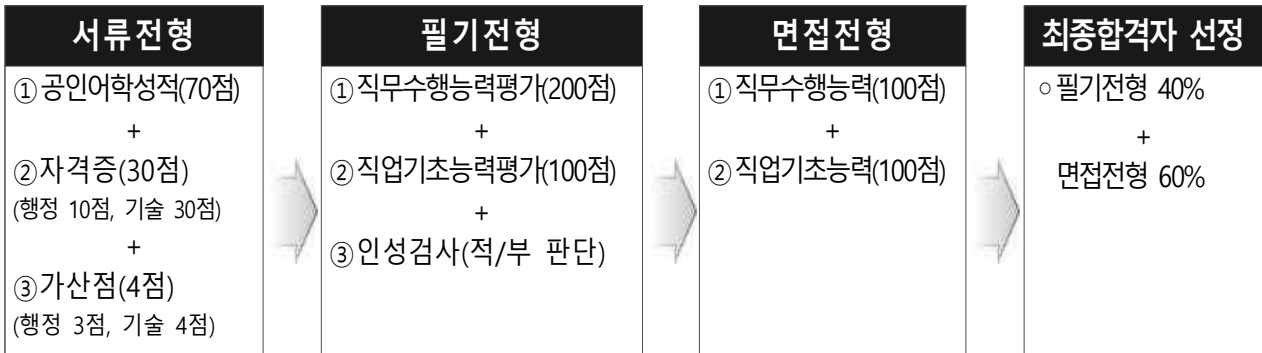
- ※ 모든 우대혜택은 기본 및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해 적용
- ※ 우대사항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
- ※ 서류전형 점수 40% 미만,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과목별 점수가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형 단계별 전 과목 총 득점이 60%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각 점수는 우대가점 제외한 원점수 기준)
 - 단, 필기전형에 조정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과락기준 이상이면 우대사항 가점 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우대사항 가점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름
- ※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명 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합격자 미적용.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하여 합격자 결정
 - 그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결정
- ※ 전형단계별 가점을 포함한 총점이 해당 전형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만점으로 산정함
-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해야 함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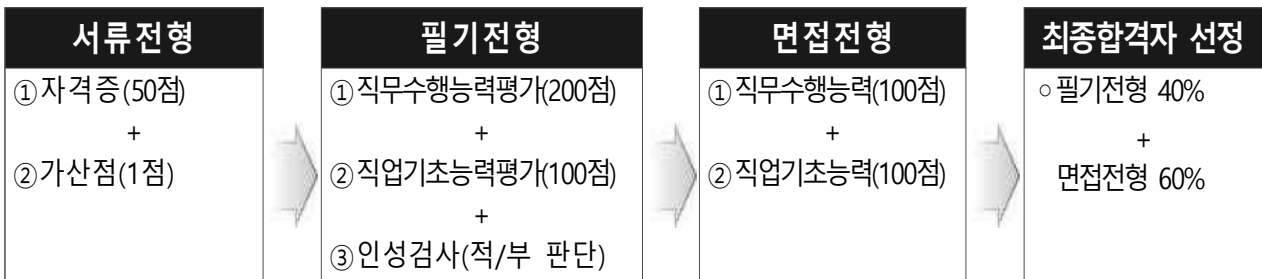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이전지역인재 붙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 및 모집분야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 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30%에 도달할 때까지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채용전형별 합격선 -7점 이내인 자에 한하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과목별 점수가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형단계별 전 과목 총 득점이 60%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필기전형에 조정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과락기준 이상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초과인 모집분야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 3개(5급-전국권역-환경, 5급-전남권역-행정-경상, 5급-전남권역-토목-토목일반) ※ 적용단계 : 서류전형~최종합격자 선정

4. 채용절차

□ 5급 전형절차



□ 6급 전형절차



※ (점수 계산) 득점 점수는 항목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 이하 버림)

① 서류전형

○ (공통) 지원서 작성불량 지원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내용과 무관한 특수기호 반복 사용, 의미없는 단어 나열
- 자기소개서 중 1개 항목 이상 미기재 또는 동일 내용 반복
- 최소분량 미달, 무의미한 내용 작성, 타기관명 기재, 표절 등
- 서류심사 면제 대상도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불량 시 불합격 처리

○ 5급(일반직) : 기본항목 + 가산점

- 합격자 결정 : 어학성적·자격증을 반영한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구분	기본항목		가산점			
	공인어학 성적	자격증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	지정 외국어	고용 디딤돌	우수인턴 (장애인)
행정	70점	10점	-	1점	1점	1점
기술	70점	30점	1점	1점	1점	1점

※ 자격증 만점 : 행정직 10점, 기술직(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30점

※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은 "기전" 분야 응시자에 한해 가산점 인정

○ 5급(일반직)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공인어학성적 (기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점수는 TOEIC 환산점수로 하되, TOEIC 외 다른 어학 시험 점수는 불임3 기준에 따른 환산점수를 반영함 - 산출식은 $50+(20 \times \text{취득점수}/850)$으로 함 * TOEIC 환산점수 850점 이상은 850점으로 계산 - 단, 보훈·장애인 전형은 TOEIC 환산점수 600점 이상이면 만점 처리
자격증 (기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서류접수 마감일(2025.10.15.)까지 유효한 해당자격 보유한 자 ◇ 공통 인정 자격증(10점) +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증(20점) - 불임2 참조하되, 국내 자격증에 한함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자격증 중 아래 자격 보유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지정외국어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지정외국어 시험성적 보유자. 단, 2023.11.18.(2차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부터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10.15)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의 경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프랑스어) DELF B1이상 또는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 - (스페인어) DELE B1이상 또는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
고용 디딤돌 수료생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우리 공사 고용디딤돌 수료생
우수인턴 (장애인인턴)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우리 공사 우수인턴(장애인인턴)

○ 6급(기사직) : 기본항목 + 가산점

- 합격자 결정 : 자격증을 반영한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구분	기본항목	가산점
	자격증	전기 분야 지정 자격증
기술	50점	1점

※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은 "기전" 분야 응시자에 한해 가산점 인정

○ 6급(기사직)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자 격 증 (기 본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서류접수 마감일(2025.10.15)까지 유효한 해당자격 보유한 자 ◇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증(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2 참조하되, 국내 자격증에 한함
전 기 분 야 지 정 자 격 증 (가 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자격증 중 아래 자격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② 필기전형

○ (공통) 직무수행능력(200점), 직업기초능력(100점), 인성검사(적/부 판단)

- 객관식(5지 선다)으로 출제되며,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 난이도
 - 5급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 6급 : 해당분야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산업기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 5급(일반직) 시험과목

시험과목	채용분야		출제범위(수준)
직무수행 능력 (40문항, 200점)	경상 (택1)	경영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회계, 관리회계 등
		경제학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등
	법정 (택1)	법학	헌법, 민법(가족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
		행정학	행정학원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등
	농학 (택1)	농학	재배학, 식용작물학 등
		농업경제학	농업경제학 등
	전산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등
	토목일반	토목학	수리학, 농업수리학, 응용역학 등
	조경	조경학	조경계획론, 조경설계론, 조경관리론 등
	도시계획	도시계획학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등
	지질	지질학	지하수학, 암석학, 지질공학, 물리탐사학 등
	기계	기계학	유체기계, 재료역학, 열역학 등
	전기	전기학	전력공학,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기기 등
	건축	건축학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등
	환경 (택1)	생물학	생물학, 계통분류학, 환경생태학, 수질환경, 토양환경 등
토양학		토양학(농업분야), 환경생태학, 수질환경, 토양환경 등	
직업기초 능력 (50문항, 100점)	경상, 법정, 농학, 전산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혼합출제)
	토목일반, 조경, 도시계획,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환경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혼합출제)
인성검사	전 분야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 전반

※ 선택과목(경상, 법정, 농학, 환경 해당) 점수는 표준점수제에 의해 동일한 척도로 조정

○ 6급(기사직) 시험과목

시험과목	채용분야		출제범위(수준)
직무수행 능력 (40문항, 200점)	토목일반	토목학	수리학, 농업수리학, 응용역학 등
	기계	기계학	유체기계, 재료역학, 열역학 등
	전기	전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등
	건축	건축학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등
직업기초 능력 (50문항, 100점)	토목일반, 기계, 전기, 건축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혼합출제)
인성검사	전 분야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 전반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각 2배수 인원을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단, 전형별 세부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 별도 적용

채용 예정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필기전형 합격자 수	5명	8명	9명	10명	12명

- 인성검사결과 부적격에 해당되는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탈락
- 각 과목별(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득점(가산점 제외)이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 득점이 6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 단, 필기전형에 조정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과락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음

③ 면접전형

- 심사방법 : 직무수행능력 면접과 직업기초능력 면접 등 평가 진행
 -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하며, 면접방식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내용

면접단계	평가내용
직무수행능력 면접(100점)	실무지식, 직무역량 등
직업기초능력 면접(100점)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④ 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의 전형별 총점을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후 필기전형 40%(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60%(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단, 면접전형 각 과목별(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득점(가산점 제외)이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득점이 6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①취업지원 대상자→②면접전형 고득점자→③필기전형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④필기전형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⑤서류전형 고득점자

5. 예비합격자 제도 및 부정행위자 조치

□ 예비합격자 제도

- 公社 「채용관리세칙」 제18조2(예비후보자)에 따라 예비합격자(전형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대상 예비순번 부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5. 29 까지
 - ※ 적격자 : 단계별 과락, 인성검사 부적격,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公社 「채용관리세칙」 제1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10. 2.(목) ~ '25. 10. 15.(수) 14:00 (※ 마감시각 준수)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rc.cairos.co.kr/krc/>)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시를 준수하여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일 14:00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종료 후 수정 불가)

- ◇ 최종 제출 완료 전, 기재사항(일자, 등록번호 등)을 제출 예정인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관련 시스템 오류 및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1522-59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공고일	9. 3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채용 홈페이지 활용 (알리오, 나라일터 포함) · 공고기간 : ~ 10. 15(수)
지원서 접수	10. 2(목) ~10. 15(수) 14:00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2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증빙서류 제출(1차)	10. 28(화) ~10. 31(금) 14:00	· 우대사항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이전지역인재 포함)
필기전형	11. 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예정) ·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적/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1. 13(목)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증빙서류 제출(2차)	11. 13(목) ~11. 18(화)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자격증, 가점사항 등 확인 - 수집된 서류는 기재사실 검증을 위해 활용하며 평가위원회에게는 미제공
면접전형	11. 24(월) ~12. 5(금)	· 나주(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12. 16(화)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수습 임용	12. 31(수)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8. 증빙서류 제출

- ◇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 기재사항 검증을 위해 활용되며, **평가 외 사항(성명, 연락처 등)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검증 대상 외의 자료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별도 제출하지 말 것)
- ◇ 증빙서류는 스캔(사본)하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파일(PDF 등)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불합격 등)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시기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우대사항 등 평가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은 **증빙서류 제출 기간에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등록**
- 증빙서류의 원본은 최종전형 단계 대상자(면접시험)에 한하여 추후 제출 (서류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제출서류 (※ 발급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우대사항 등 모든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서류접수 마감일(25. 10. 15)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아래 발급유효기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출력방법 안내사항** **붙임6** 반드시 확인

증빙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발급유효기간
주민등록 초본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은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 초본에 병역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개명한 사람은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모집권역(전국권역 제외) 거주자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졸업 (예정) 증명서	①모집권역 지원자 *권역 내 소재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권역 지원자(모집권역 내 소재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발급유효기간
	②이전지역 인재	◇ 이전지역인재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어학 증명서	어학성적 입력자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 내
자격증	자격증 소지자	◇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우 사 대 항	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자 중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父)또는 모(母)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본인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다문화가족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이전 국적 반드시 표기 필요) 1부 ※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대신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립준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 1(주민센터 또는 보호시설발급) (퇴소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보호종료확인서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경력단절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중 택1 	공고일 이후 발급분

증빙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발급유효기간
		※ 제출 서류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경 력 증 명 서	경력사항 작성 자	◇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4대보험 증빙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중 택 1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서류) '25. 10. 28. ~ 10. 31.
- (필기) '25. 11. 13. ~ 11. 17.
- (면접) '25. 12. 16. ~ 12. 31.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rc.cairos.co.kr/krc/>)를 통해 접수

□ 처리방법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내용 검토결과 회신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 (합격자 발표 등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A 활용)
-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0. 유의사항

- 직급 및 채용분야 간, 채용분야 내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를 불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홈페이지 원서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 요구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의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정보를 기준으로 필기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며, 입사지원서 및 본인인증 상의 허위기재·오기재 등으로 인한 선발전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별, 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종교 등)이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금지하며, 의도적으로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불합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공사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서류 위·변조 시에는 향후 우리 공사 사원 선발 시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2021.12.21. 이후 발급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지참 필수
 -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제출 가능
-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희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는 채용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전형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세칙 제19조의2)에 따라 조치합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붙임7** 양식을 작성하여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에 공사를 방문하여 원본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추가합격자는 임용 동의서 제출 필수)
 -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 분기별로 회사 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작성 및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콜센터 : ☎1522-5992
 - 채용 홈페이지 : <https://krc.cairos.co.kr/krc/>
- ※ 문의 전,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과 FAQ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 【붙임2】** 채용 관련 자격증
- 【붙임3】** 공인 어학성적 TOEIC 환산기준표
- 【붙임4】**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용
- 【붙임5】** 권역별 사업장 소재지 현황
- 【붙임6】** 증빙서류 출력방법 안내
-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붙임8】** 직무기술서(별첨)

【붙임 1】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 2】

채용 관련 자격증

□ 5급 자격증 적용기준(30점)

○ 공통 인정 자격증 10점 + 직계별 인정 자격증 20점

※ 행정직 10점 만점 (공통 인정 자격증 10점)

기술직 (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30점 만점

(공통 인정 자격증 10점 + 직계별 인정 자격증 20점)

○ 공통 인정 자격증(10점)

- 분야별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10점까지 인정하며, 동일분야 내에서는 최고등급 자격증 1개만 적용

예)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4점) ⇒ 5점

②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5점), KBS한국어능력 1급(5점) ⇒ 5점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정보처리기사(5점) ⇒ 10점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4점), 한국실용글쓰기 2급(4점),

정보처리산업기사(4점) ⇒ 10점

분야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국어능력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 KBS한국어능력 1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IT능력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3급

※ 컴퓨터활용능력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만 인정

※ "전산" 분야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별 인정 자격증으로만 인정하고, 공통 인정자격증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국어능력인증, KBS한국어능력, 한국실용글쓰기" 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2025. 10. 15. 기준)

○ 직계별 인정 자격증(20점)

- 응시분야 자격증 중 최고등급 자격증 1개 해당 점수 적용

예) ①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 20점

②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 10점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0점)	2등급 (10점)
행정	경상/법정/농학	-	-
전 산	전 산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舊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토 목	토목일반	토질및기초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항만및해안기술사	-
		도로및공항기술사	-
		수자원개발기술사	-
		상하수도기술사	-
		농어업토목기술사	-
		토목시공기술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콘크리트기사
		-	토목기사
		-	해양공학기사
	조 경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기 전	기 계	기계기술사(舊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배관기능장	-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舊 건설기계기사)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0점)	2등급 (10점)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	일반기계기사 (舊기계설계기사)
		-	농업기계기사
		-	산업안전기사
		-	설비보전기사
		-	건축설비기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발송배전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안전기술사	-
		소방기술사	-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통신설비기능장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	전기공사기사
		-	무선설비기사
		-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건 축	건축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사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실내건축기사		
-	시각디자인기사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0점)	2등급 (10점)
지 질	지 질	지질및지반기술사	-
		자원관리기술사	-
		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	광산보안기사
		-	응용지질기사
환 경	환 경	대기관리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해양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소음진동기술사	소음진동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시설원예기사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양식기사
		-	대기환경기사
		-	수질환경기사
		-	자연생태복원기사
		-	생물분류기사(식물, 동물)
		-	식물보호기사
		-	유기농업기사
		-	화학분석기사
		-	해양환경기사
-	해양자원개발기사		
-	온실가스관리기사		

□ 6급 자격증 적용기준(50점)

○ 직계별 인정 자격증은 같은 행에 위치한 상위등급 1개만 인정하되,
다른 행에 위치한 자격증은 별도로 적용, 최대 50점까지 인정

예) ①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 20점

② 토목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30점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40점)	2등급 (20점)	3등급 (10점)
토 목	토목일반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토질및기초기술사	-	-
		토목구조기술사	-	-
		항만및해안기술사	-	-
		도로및공항기술사	-	-
		수자원개발기술사	-	-
		상하수도기술사	-	-
		농어업토목기술사	-	-
		토목시공기술사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	해양공학기사	-
-	-	해양조사산업기사		
기 전	기 계	기계기술사(舊기계공정설계 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
		배관기능장	-	배관산업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舊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	설비보전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40점)	2등급 (20점)	3등급 (10점)
		-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舊기계설계기사)	-
		-	-	기계설계산업기사
		-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	-
	발송배전기술사	-	-	-
	전기응용기술사	-	-	-
	전기안전기술사	-	-	-
	소방기술사	-	-	-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	-
	통신설비기능장	-	-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태양광)		
건 축	건축사	-	-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
	건축시공기술사	-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건축구조기술사	-	-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붙임 3】

공인 어학성적 TOEIC 환산기준표

□ (5급) 영어

개정 TEPS(New TEPS) v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336~338	850	301~303	785	272~273	720	247	655
333~335	845	299~300	780	270~271	715	245~246	650
330~332	840	297~298	775	268~269	710	243~244	645
327~329	835	294~296	770	266~267	705	241~242	640
324~326	830	292~293	765	264~265	700	239~240	635
322~323	825	290~291	760	262~263	695	237~238	630
319~321	820	288~289	755	260~261	690	236	625
316~318	815	285~287	750	258~259	685	234~235	620
314~315	810	283~284	745	256~257	680	232~233	615
311~313	805	281~282	740	254~255	675	230~231	610
309~310	800	279~280	735	252~253	670	229	605
306~308	795	277~278	730	250~251	665	227~228	600
304~305	790	274~276	725	248~249	660		

TOEFL vs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98	850	90	790	82	725	74	645
97	840	89	785	81	715	73	640
96	835	88	780	80	705	72	630
95	825	87	765	79	695	71	620
94	820	86	760	78	685	70	615
93	815	85	750	77	675	69	605
92	810	84	745	76	665	68	600
91	800	83	735	75	655		

TOEIC-S	IH	IM3	IM2	IM1	IL
TOEIC	850	750	700	660	600

OPIc	IH	IM3	IM2	IM1	IL
TOEIC	850	750	700	660	600

(5급) 일본어 : JPT 성적 고유점수

(5급) 중국어

○ 新HSK

- 환산점수 = ③해당등급 1,000점 환산점수 범위의 최저점 +
 {(응시자성적총점- ①해당등급 등급점수범위의 최저점)×②점수폭}

등 급	① 등급점수범위	② 점수폭	③ 1,000점 환산점수 범위
新 HSK 4급	180~194	3.43	501~549
	195~209	3.43	551~599
	210~300	1.09	601~699
新 HSK 5급	180~194	3.43	701~749
	195~209	3.43	751~799
	210~300	1.09	801~899
新 HSK 6급	180~194	1.71	901~925
	195~209	1.71	926~950
	210~300	0.54	951~

○ BCT(B) L/R : BCT(B) L/R(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청각장애(2·3급) 응시자 적용기준

구 분	시험구성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비고
TOEIC, JPT	독해 50% + 청해 50%	독해성적 × 200%	청해성적 제외
NEW TEPS	독해 40% + 어휘 10% + 문법 10% + 청해 40%	(독해+어휘+문법성적) × 167%	청해성적 제외
TOEFL-IBT	독해 25% + 청해 25% + 말하기 25% + 쓰기 25%	(독해성적+쓰기성적) × 200%	청해, 말하기 성적 제외
BCT(B) L/R	독해 50% + 청해 50%	독해성적 × 200%	청해성적 제외
HSK	독해 33.3% + 청해 33.3% + 쓰기 33.3%	(독해성적 × 150%) + (쓰기성적 × 150%)	청해성적 제외

【붙임 4】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용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1. 이전 지역인재 개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이전지역 학교” 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2. 이전지역 학교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분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3. 이전 지역인재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㉓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㉕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㉖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㉗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㉘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㉙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예 시]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붙임 5】

권역별 사업장 소재지 현황

권역구분	부서명	위치
경기권역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여주·이천지사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양평·광주·서울지사	경기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화성·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38-2
	연천·포천·가평지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파주시사	경기 파주시 중앙로 240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50번길 14
	강화·옹진지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김포지사	경기 김포시 돌문로 11-1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강변로 63
	안성지사	경기 안성시 실왕길 5
	농어촌연구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인재개발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농어촌자원개발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화안사업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토지개발사업단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91
강원권역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사우4길 18
	홍천·춘천지사	강원 홍천군 홍천로 671
	원주시사	강원 원주시 문막시장1길 9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봉화길 63
	영북지사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철원지사	강원 철원군 금학로 74번길 21
충북권역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청주시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보은지사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옥천·영동지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진천지사	충북 진천군 중앙북로 38
	괴산·증평지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
	음성지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충주·제천·단양지사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충남권역	충남지역본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공주시사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죽성로 94-19
	아산시사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서산·태안지사	충남 서산시 안전로 252
	논산시사	충남 논산시 관축로 152

권역구분	부서명	위치
	세종·대전·금산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부여지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서천지사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청양지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87-5
	홍성지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예산지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당진지사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안전진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
	충남서부관리단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북권역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남원지사	전북 남원시 농고길 25 주1동
	순창지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동진지사	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부안지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군산지사	전북 군산시 옥산로 272-6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전주·완주·임실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고창지사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정읍지사	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무진장지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금강사업단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새만금사업단	전북 김제시 도작로 71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전북 군산시 궁포1로 24-9 엔비빌딩 5층
	전남권역	전남지역본부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
순천·광양·여수지사		전남 순천시 조례2길 33
나주지사		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담양지사		전남 담양군 삼거리길 12-27
곡성지사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구례지사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고흥지사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보성지사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화순지사		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장흥지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강진지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
해남·완도지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
영암지사		전남 영암군 낭주로 113-6
목포·무안·신안지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10
함평지사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영광지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0-14

권역구분	부서명	위치
	장성지사	전남 장성군 강변로 572-7
	진도지사	전남 진도군 남산2길 44
	영산강사업단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경북권역	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
	포항·울릉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2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원효로 181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323
	구미·김천지사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영주·봉화지사	경북 영주시 구성로285번길 10
	영천지사	경북 영천시 주남1길 39-7
	상주지사	경북 상주시 북천로 5
	문경지사	경북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경산·청도지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26
	의성·군위지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청송·영양지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영덕·울진지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786
	고령지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성주지사	경북 성주군 성주산업단지5로5길 59
	칠곡지사	경북 칠곡군 관문로 99
	예천지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달성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 10길 9
경남권역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0
	김해·양산·부산지사	경남 김해시 가락로49번길 12-1
	고성·통영·거제지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2길 8-3
	진주·산청지사	경남 진주시 소호로 96
	의령지사	경남 의령군 의병로14길 5
	합안지사	경남 합안군 가야읍 합안대로 591
	창녕지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밀양지사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20
	창원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진산대로 406-7
	사천지사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1803
	거창·함양지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합천지사	경남 합천군 동서로 163
하동·남해지사	경남 하동군 송림1길 12	
제주권역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붙임 6】

증빙서류 출력방법 안내

- 유의사항 :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24(www.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등에서 “인터넷 발급”하여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 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진위확인(보호종료확인서의 경우 정부24 발급 가능)
 -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상·하단의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발급처마다 자리 수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구분		발급경로
주민등록초본 (지원자 전원)		-정부24 : www.gov.kr ※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병역사항 포함되지 않을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개명자의 경우, 개명사항 포함 ※ 권역 지원자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권역 지원자, 이전지역인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정부24 : www.gov.kr 또는 각 학교 홈페이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정부24 : www.gov.kr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https://www.neis.go.kr/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어학성적 입력자)		-기한 내 유효한 해당 어학성적 증명서 스캔본
자격증 (자격증 소지자)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기술분야)	-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24 : www.gov.kr 또는 -큐넷 : www.q-net.or.kr

구분		발급경로	
우대 사항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저소득층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정부24 : www.gov.kr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부모 명의)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정부24 : www.gov.kr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택1) (퇴소일자 확인가능해야 함)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호시설 발급 ※보호종료확인서의 경우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경력단절여성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택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구분	발급경로
<p>경력 기재자</p>	<p>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택 1)</p>	<p>-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p> <p>-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p> <p>-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정부24 : www.gov.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total.comwel.or.kr/</p>

【붙임 7】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서,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합격자 운영기간(~26.5.29)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공사로 팩스(061-338-5928)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 등 반환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청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송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공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운영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